

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서상열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1855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4년 05월 27일

발 의 자: 서상열 의원(1명)

찬 성 자: 고광민, 김규남, 김동욱,
김영철, 김원중, 김재진,
김태수, 김형재, 김혜영,
남궁역, 민병주, 박상혁,
박 석, 박영한, 박춘선,
유만희, 유정인, 윤기섭,
윤종복, 이봉준, 이상욱,
장태용, 최민규, 홍국표,
황유정, 황철규 의원(26
명)

1. 제안이유

- 코로나19 이후 E-커머스 확산에 따라 생활 물류 수요가 증가하고, 새벽·당일 배송과 같은 빠른 배송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커짐에 따라 최근 정부에서 도심 내 새로운 유형의 물류시설인 주문 배송시설을 도입하는 『물류시설법』 및 하위법령 개정안이 2월 17일부터 시행되어 도심 내 생활물류 시설 확산 기반이 마련됨
- 이에 도시계획 조례에도 도심 내 주문배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생활물류 수요에 대응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제1종일반주거지역 및 제2종일반주거지역, 생산녹지지역, 자연녹지지역에 「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의2에 따른 주문배송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(같은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물류창고업 등록을 해야 하는 시설을 말한다)을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 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,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, 건축법 시행령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7조제1호에 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카. 「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의2에 따른 주문배송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백제곱미터 미만인 것(같은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물류창고업 등록을 해야 하는 시설을 말한다)

제28조제3항제1호에 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러. 「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의2에 따른 주문배송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백제곱미터 미만인 것(같은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물류창고업 등록을 해야 하는 시설을 말한다)

제37조제2호에 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카. 「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의2에 따른 주문배송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백제곱미터 미만인 것(같은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물류창고업 등록을 해야 하는 시설을 말한다)

제38조제2호 중 “안마시술소”를 “안마시술소 및 주문배송시설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7조(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) 제1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는 영 별표 4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4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.</p> <p>1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 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다음 각 목의 건축물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em;">가. ~ 차. (생 략)</p> <p><신 설></p> <p>2. ~ 11. (생 략)</p> <p>제28조(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) ①·② (생 략)</p>	<p>제27조(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----- ----- -----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em;">가. ~ 차. (현행과 같음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em;">카. 「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 5호의2에 따른 주문배송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백제곱미터 미만인 것(같은 법 제21조의 2제1항에 따라 물류창고업 등록을 해야 하는 시설을 말한다)</p> <p>2. ~ 11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28조(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

③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는 영 별표 5 제1호의 각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5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.

1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 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다음 각 목의 건축물
가. ~ 더. (생 략)

<신 설>

2. ~ 15. (생 략)

④ (생 략)

제37조(생산녹지지역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) 생산녹지지역안에서는 영 별표 16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16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

③ -----

-----.

- 1.-----

가. ~ 더. (현행과 같음)

러. 「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 5호의2에 따른 주문배송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백제곱미터 미만인 것(같은 법 제21조의 2제1항에 따라 물류창고업 등록을 해야 하는 시설을 말한다)

2. ~ 15. (현행과 같음)

④ (현행과 같음)

제37조(생산녹지지역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) -----

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.

1. (생략)

- 2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 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다음 각 목의 건축물
가. ~ 차. (생략)

<신설>

3. 삭제

4. ~ 15. (생략)

제38조(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) 자연녹지지역안에서는 영 별표 17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17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.
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- 2.-----

가. ~ 차. (현행과 같음)

카. 「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 5호의2에 따른 주문배송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백제곱미터 미만인 것(같은 법 제21조의 2제1항에 따라 물류창고업 등록을 해야 하는 시설을 말한다)

4. ~ 15. (현행과 같음)

제38조(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) -----

-----.

1. (생략)

2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 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휴게음식점, 제과점, 일반음식점 및 안마시술소

3. ~ 13. (생략)

1. (현행과 같음)

2. -----

--- 안마시술소 및 주문배송 시설

3. ~ 13. (현행과 같음)

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

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7조(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) 제1호, 제28조(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) 제3항제1호, 제37조(생산녹지지역 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) 제2호, 제38조(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) 제2호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(주문배송시설)을 추가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서울시의 재정 수입 순감소나 재정 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

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	재정분석담당관
담 당 관	오희선
추계세제팀장	김중헌
추 계 분 석 관	김지혜

☎ 02-2180-7953
e-mail : kjh0123@seoul.go.kr

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.